

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

- 관세청,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 시행

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하여 5월 29일(금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은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개정사항*을 반영하고,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- * 제14조제6항 개정(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 규정 완화) 및 제12조의2, 제13조의2 신설(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규정)

첫째, ‘환급 제증명서류* 자율발급 제도’를 오는 7월 1일(수)부터 시행한다.

- * 평균세액증명서,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, 수입세액분할증명서

세관장이 지정한 △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, △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, △관세사는 향후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. 자율발급 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와 지정요건*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.

- * [지정요건] 외국인투자기업, 환급성실도 상위업체,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

< 환급 제증명 자율발급 도입 >



둘째,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기간을 완화한다.

정부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금액에 비례해 세금을 간편하게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*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로 낸 세금을 계산해 정산받는 개별환급 방식이 기업에 더 유리할 때도 있다.

* [간이정액환급]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금액 1만 원당 일정한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

기존에는 두 방식 간 변경에 2년의 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으나,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출기업의 환급 선택권을 확대하였다.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에서 적용으로의 변경 제한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고, 적용에서 비적용으로의 변경 제한기간은 삭제하였다.

셋째, 소요량* 계산에 필요한 부산물공제** 비율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* [소요량]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환급금 산출의 기본 요소

** [부산물공제]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금액에서 부산물의 가치만큼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

수출기업이 부산물 공제비율을 환급신청 건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, 일정 기간 또는 1회계연도 동안 동일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 산정의 편의를 높인다.

넷째,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간소화한다.

관세조사 시 ‘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’ 이행여부 점검을 최소화하여 성실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 부담을 줄인다.

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“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환급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해져 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, “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.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안 신규 조문대조표

담당 부서	심사국	책임자	과 장	오현진 (042-481-7870)
	세원심사과	담당자	사무관	신근호 (042-481-7875)

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안 신·구 조문대조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32조(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 신청이 영 제1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도 승인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~ ⑦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절 증명서류의 <u>P/L발급</u></p> <p>제57조(<u>P/L발급업체 등 지정</u>) ① 세관장은 <u>별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</p>	<p>제32조(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제3항</u> ----- <u>적용승인</u> ----- ----- <u>1년</u> ----- ----- ----- <u>적용승인</u> ----- ----- ----- <u>비적용 승인</u> ----- ----- <u>1년</u> -----.</p> <p>⑥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절 증명서류의 <u>자율발급</u></p> <p>제57조(<u>자율발급업체 등 지정</u>) ① ----- <u>별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</u></p>	<p>○ 환특법 시행령 제 14조제6항 개정사항 (2026.2.27.) 반영: 정액환급률표 적용·비적용 승인 제한기간 완화</p> <p>- 비적용→ 적용변경 제한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</p> <p>- 적용→ 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삭제</p> <p>○ 환특법 시행령 제 12조의2, 제13조의2 신설(2026.2.27.)</p>

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(이하 “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관세사”라 한다)에게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·분증·평세증(이하 이 절에서 “기납증등”이라 한다)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② 기납증등의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P/L발급업체(관세사)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업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지정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P/L발급업체

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(이하 “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”라 한다)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 ----- 자율발급업체(관세사) -----

③ ----- 자율발급업체

반영: 제증명서류
자율발급 근거 마련

- 용어 수정
 - P/L발급업체 → 자율발급업체, P/L발급관세사 → 자율발급관세사

- 용어 수정

- 용어 수정

또는 P/L발급관세사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.

④ 세관장은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관세사가 「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」 제9조 제1항에 따라 P/L신고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기납증등의 P/L발급을 정지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발급할 수 있다.

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관세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납증등의 P/L발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.

⑥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관세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제5항에 따른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

또는 자율발급관세사 -----

④ -----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 -----

----- 자율발급 -----

⑤ -----

-----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 -----

----- 자율발급 -----

⑥ ----- 자율발

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 -----

-----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

○ 용어 수정

○ 용어 수정

○ 용어 수정

급관세사의 지정 취소를 하거나 지정사항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의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관세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

2. ~ 3. (생략)

제58조(P/L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) ① 제57조제3항에 따라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P/L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50조부터 제52조에 의해 기납증을 발급하거나 제56조에 의해 분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서류에 의하여 기납증 등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관세사로부터 제41조제2항, 제47조제2항

급관세사 -----
-----.

1. -----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 -----

2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자율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) ① -----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 ----- 자율발급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 -----

○ 용어 수정

○ 용어 수정

○ 용어 수정

및 제54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.

제59조(기납증등의 P/L발급) ①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관세사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58조에서 정한 기납증등을 P/L발급하려면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납증등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통지하는 바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다.

②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P/L발급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기납증등에 별표 6의 P/L발급업체 등이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전자문서 전송업체의 경우에는 증명인 날인을 생략하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기납증등을 발급할 수 있

----- 자율
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 -----
-----.

제59조(기납증등의 자율발급) ①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 -----
----- 자율발급 -----

-----.

②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가 -----
----- 자율발급 -----
----- 자율발급업체 -----

-----.

○ 용어 수정

○ 용어 수정

다.

③ P/L발급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 후에는 기납증등 발급 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청업체에게 되돌려 준다.

제112조(부산물 관리) ① ~ ② (생략)

③ 제2항의 A, B, C 및 D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.

1. (생략)

가. ~ 다. (생략)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(일정기간별)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.

--.

③ 자율발급관세사 -----

-.
-

제112조(부산물 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2. 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거나, 1회계연도(일정기간별)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.

○ 용어 수정

○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1회계연도 (일정기간별)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른 부산물 공제 비율 선택적 적용 허용

가. ~ 다. (생략)

<신설>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제122조2(소요량 사전심사와 관세조사의 관계)

① 「관세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.

②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지하기 전에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「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제9조제1항제5호 관세환급에 관한 사항 중 “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한다. 다만, 법 제10조의2제5항 단서의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세조사 대상에 포함한다.

-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완화 근거 마련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부칙(관세청 고시 제2026-35호 2026.5.29)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장 제4절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자율발급 신청분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종전 P/L발급업체 및 P/L발급관세사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제57조에 따라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.

제4조(적용례) 별지 제27호 개정서식은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에 시행일, 종전 P/L발급업체 또는 P/L발급 관세사에 대한 경과조치 명시

[별표 2] 환급신청서 작성요령(제7조의2,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)

III 항목별 기재요령

가. 공통사항(갑) 기재요령

- 1. ~ 4. (생략)
- 5. 수출물품(개요)
 - 5-①. (생략)
 - 5-②. 환급수출형태: 환급신청물품의 수출형태부호 기재
 - ☞ 예시 : 「관세법」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 “01”
 - 01~02 (생략)
 - 03: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·가공 후 공급물품(법 제4조제3호)
 - 04: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수입 원상태 공급물품(법 제4조제3호)
 - 05~26 (생략)
 - 27: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 한 상태 그대로 공급(법 제4조제3호)된 물품의 대체수출(규칙 제2조제1항제3호)
 - 28~39 (생략)

[별표 2] 환급신청서 작성요령(제7조의2,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)

III 항목별 기재요령

가. 공통사항(갑) 기재요령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수출물품(개요)
 - 5-①. (현행과 같음)
 - 5-②. -----

 - 01~02 (현행과 같음)
 - 03: ----- 재정경제부령으로 -----

 - 04: ----- 재정경제부령으로 -----

 - 05~26 (현행과 같음)
 - 27: ----- 재정경제부령으로 -----

 - 28~39 (현행과 같음)

○ 정부조직 명칭 변경 반영

[별표 3]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(제41조제3항 및 제 42조제2항 관련)

III 항목별 기재요령

가. 공통사항(갑) 기재요령

- 제출번호: 평세증의 접수 및 전산심사결과 오류 통지 및 결정 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(5자리)-연도(2자리)-일련번호(6자리)를 기재
- 1. ~ 4. (생략)
- 5. 증명인: P/L발급업체에서 발급하는 경우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날인

[별표 4]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(제7조의2, 제 47조제1항 관련)

III 항목별 기재요령

가. 공통사항(갑) 기재요령

- 1. ~ 6. (생략)
- 7. 증명인: P/L발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회사명(상호)과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하며, 그 밖의 업체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

[별표 3]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(제41조제3항 및 제 42조제2항 관련)

III 항목별 기재요령

가. 공통사항(갑) 기재요령

- 제출번호: 평세증의 접수 및 전산심사결과 오류 통지 및 결정 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(5자리)-연도(2자리)-일련번호(6자리)를 기재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증명인: 자율발급업체-----

[별표 4]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(제7조의2, 제 47조제1항 관련)

III 항목별 기재요령

가. 공통사항(갑) 기재요령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증명인: 자율발급업체-----

○ 용어 수정

○ 용어 수정

[별표 5] 분할증명서 작성요령(제54조제2항 관련)

III 항목별 기재요령

가. 공통사항(갑) 기재요령

1. ~ 6. (생략)

7. 증명인: P/L발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회사명(상호)과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하며, 그 밖의 업체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

[별표 6] P/L발급업체 등이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(제59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5] 분할증명서 작성요령(제54조제2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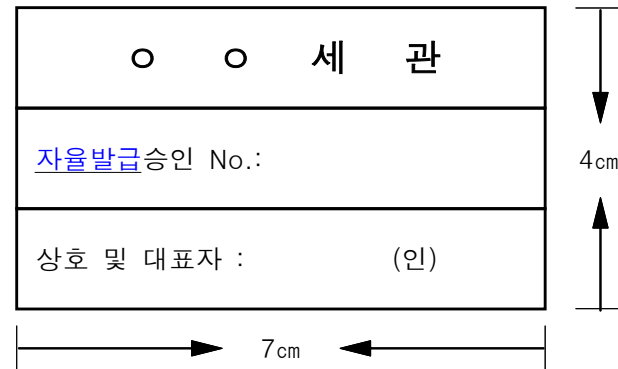
III 항목별 기재요령

가. 공통사항(갑) 기재요령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증명인: 자율발급업체 -----

[별표 6] 자율발급업체 등이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(제59조제2항 관련)



○ 용어 수정

○ 용어 수정

[별지 제27호서식] P/L발급업체 지정신청서(제57조 관련)

※ 수율을 정지표에 대한 상세 중 통급사후처리에 관한 표시 [별지 제27호서식]

P/L발급업체 지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기호를 합니다.

지정번호		처리기간		처리	
신청인	상호	대표자			
	사업자등록번호	통급기부번호	전화번호		
	주소				

차제 점산율비 HO5% P/O음 기타

발급 실적					
구분	()년		()년		비고
	입수	회산	입수	회산	
기납증					
분증					
판매증					
계					

발급 담당자

소속	직위	성명	연락처	지정일자

※ 수율을 정지표에 대한 상세 중 통급사후처리에 관한 표시, 제57조제2항에 의해 P/L발급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 세 관 장 귀하

접수서	1. 점산율에 대한 자료 제공한 경우에 한함	발달	후부	과감	감
	2. 유관단체가 발한 자료 제공한 경우에 한함				
	3. 그밖에 서명인이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				

※ 발급요청이 진위확인을 위하여 유관확인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시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27호서식] 자율발급업체 지정신청서(제57조 관련)

※ 수율을 정지표에 대한 상세 중 통급사후처리에 관한 표시 [별지 제27호서식]

자율발급업체 지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기호를 합니다.

지정번호		처리기간		처리	
신청인	상호	대표자			
	사업자등록번호	통급기부번호	전화번호		
	주소				

차제 점산율비 HO5% P/O음 기타

자율 요건(제57조제1항) 1호 2호 3호 4호

①호) 자율발급지급(자율발급지급) 제57조 제5호에 의해 자율발급지급(자율발급) 한 자, 자율발급지급(자율발급) 한 자
 ②호) 전체 통급업체에 상응하여 비율을 평가한 결과 상위 30% 이내의 해당하는 업체
 ③호) 「전자서명」 제7조에 따라 통급을 하려고 할 때 발급 제57조의 다른 조항을 수월하게 하
 ④호) 「간주입력 처리에 관한 표시」 제58조에 따른 항목 적용대상자가

발급 실적					
구분	()년		()년		비고
	입수	회산	입수	회산	
기납증					
분증					
판매증					
계					

발급 담당자

소속	직위	성명	연락처	지정일자

※ 수율을 정지표에 대한 상세 중 통급사후처리에 관한 표시, 제57조제2항에 의해 자율발급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 세 관 장 귀하

접수서	1. 점산율에 대한 자료 제공한 경우에 한함	발달	후부	과감	감
	2. 유관단체가 발한 자료 제공한 경우에 한함				
	3. 그밖에 서명인이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				

※ 발급요청이 진위확인을 위하여 유관확인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시하여야 합니다.

- 자율발급업체 지정 신청서 서식 개정
- P/L발급업체를 자율발급업체로 용어 수정
- 지정요건을 표시하도록 규정